

# [양형위원회 제121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]

## I. 양형위원회 제121차 회의 내역

- 일시 : 2022. 12. 5. 15:20
- 장소 :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
- 주요 안건
  - ①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(양형인자, 집행유예기준) 및 설정안 의결
  - ② 정보통신망·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(양형인자, 집행유예기준) 및 설정안 의결

## II. 운영지원단 업무보고

-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
-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
- 일본 사법부 방문
-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
- 2021 연간보고서 발간·배포
- 제8기 후반기 설정·수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
-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
- 2023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
-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보고

## III. 전문위원 업무보고

- 전문위원 제151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

## IV. 관세범죄, 정보통신망·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 심의 결과

### 1. 개요

- ▣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의결
- ▣ 정보통신망·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의결
- ▣ 향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,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23. 4.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
- ※ 아래 정리된 사항 외에는 모두 전문위원단 다수의견대로 의결됨

### 2. 공통된 양형인자 심의 결과

- 가. 특별감경인자: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(예시규정 ②)
- 범행을 주도·계획·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(예시규정 ③)
- ~~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(예시규정 ④)~~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▣ 예시규정 ②의 포함 여부: 포함(10인), 제외(1인)

- 예시규정 ②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유죄 사안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지하기로 함
- 문언 자체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져 삭제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

#### ▣ 예시규정 ③의 포함 여부: 포함(8인), 제외(3인)

- 관세범죄에서는 다른 범죄보다 실행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넓어 가담 정도를 특별감경인자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포함시키기로 함
- 반면, 특별감경인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거나, ‘소극 가담’이라는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

#### ▣ 예시규정 ④의 포함 여부: 포함(4인), 제외(7인)

- 예시규정 ③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, 실무에 혼선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포함하지 않기로 함
- 반면, 다양한 예시규정 제시를 위하여 포함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
- ‘소극 가담’은 일반감경인자로 별도 규정하지 않기로 함

### 3. 관세범죄 양형기준 심의

#### 가. 특별감경인자

- 1)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(대유형2 무신고 수입 등)

### ▣ 정의규정 수정

●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 **다만,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, “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” 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**

- 수입한 물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(공범 포함)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
- 수입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
-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·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2)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(대유형3 무신고 수출 등)

#### ▣ 정의규정 수정

●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 **다만,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, “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” 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**

- ~~수출한 물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(공범 포함)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~~
- 수출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
- 수출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·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3)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(대유형4 밀수품 취득 등)

#### ▣ 정의규정 수정

●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 **다만,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, “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” 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**

- 밀수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(공범 포함)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
- 밀수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
- 밀수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·노력을 들여 유통된 밀수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일반감경인자

1)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(모든 유형)

▣ 표결 결과

- 일반감경인자로 포함하기로 하고 정의규정 두는 안(9인) → 각각 전문위원단 다수의견대로 정의규정 의결
- 정의규정 없이 각 유형별 개별적 양형인자 규정하자는 안(2인)

2) 형사처벌 전력 없음

▣ 정의규정 수정

●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. 다만, **블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**,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.

4. 정보통신망·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심의

가. 정보통신망 침해범죄(대유형1)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

▣ ‘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(공탁 포함)’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할 것인지,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할 것인지 견해 대립: 특별(4인), 일반(5인)

▶ 일반감경인자로 ‘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(공탁 포함)’을 규정하기로 함(5인)

- ∴ 정보통신망 침해범죄(대유형1)는 개인 및 국가·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2-2 범죄군에 해당함
- 양형위원회가 2021. 8. 17. 의결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

구분	보호법익	특별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	일반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
1-1	개인	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	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 포함)
1-2		처벌불원	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 포함)
2-1	개인 및 국가·사회	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	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 포함)
2-2		-	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
3	국가·사회	-	-

- ▶ 반면, 2-1 범죄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별감경인자로 ‘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(공탁 포함)’을, 일반감경인자로 ‘상당한 피해회복(공탁 포함)’을 규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(4인)

나. 특별가중인자: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

▣ 정의규정에 “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”도 포함할지 여부 : 제외(5인), 포함(4인)

▶ 정의규정

- 정보통신망 침해범죄(대유형1),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(대유형3)

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
- 타인에 대한 보복·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
-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
-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5. 향후 일정

가. 제122차 양형위원 전체회의

▣ 일시 : 2023. 2. 13. (월) 오후

▣ 안건 :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심의(형종 선택 기준, 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행유예 기준) 및 의결,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의결

나. 공청회

▣ 일시 : 2023. 3. 27. (월) 오후

다.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

▣ 일시 : 2023. 4. 24. (월) 오후